

# 10. 建設技術管理法 施行令 改正 推進

資料提供：建設部

건설부는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관리와 감리기능을 강화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'93. 6. 11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·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개정(안)을 마련 '93. 8. 13 경제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'93. 9월중 공포예정으로 추진중입니다.

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중 개정령(안) 설명자료.

## I. 공동연구개발체계의 확립

(안 제29조의2)

### <개 정>

- 건설기술연구·개발 실시대상기관을 정함(신설)
  - － 국·공립 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, 대학·전문대학 및 건설업체 부설연구소등
- 연구·개발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과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(신설)
  - － 정부외의 출연기관의 범위 : 산하투자기관, 각종협회 및 공제조합
  - － 기업의 범위 :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
- 전문관리기관의 지정·운영(신설)
  - － 건설기술연구과제의 선정, 협약체결, 출연금의 지급·관리, 연구성과의 이용·관리등 사업을 위탁

<개정이유>

- 산·학·연·관의 공동연구 추진체계 마련으로 건설기술 5개년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건설기술 연구·개발사업 실시

**II. 품질시험대상공사의 범위 확대 및 안전점검 보완**  
(안 제41조, 제41조의3 내지 제47조의6)

**1. 품질시험대상공사의 범위 확대**

<현행 및 개정>

(단위 : 총공사비, 연면적)

구	분	현	행	개	정
토	목	공	사	10억원 이상	5억원 이상
건	축	공	사	5,000m <sup>2</sup> 이상	661m <sup>2</sup> 이상
특	수	공	사	10억원 이상	5억원 이상
전	문	공	사	2억원 이상	2억원 이상

<개정이유>

- 소규모공사에까지 품질시험을 의무화하여 공사품질 향상 도모

**2. 안전점검의 보완**

<개정>

- 안전점검을 자체 안전점검과 전문기관 안전점검으로 구분하여 자체안전 점검은 매일, 전문기관 안전점검은 연 1회이상 실시(신설)
- 안전점검의 방법을 명시하고 그 결과를 하자보수 책임기간까지 보관(신설)

<개정이유>

- 재해발생의 잠재적요인 사전 발견, 우발사고 및 대형사고 사전방지

### Ⅲ. 건설공사 책임감리의 강화

(안 제50조의2, 제50조의3)

<현행 및 개정>

- 건설공사의 감리제를 책임감리제로 일원화
- 감리대상기관의 범위 확대
  - 현행 : 국가, 지자체, 정부투자기관
  - 개정 : 국가 및 지자체의 출연기관, 지방공기업, 특별법에 의한 공기업 추가
- 감리대상공사의 범위 확대
  - 현행
    - 시공감리 : 50억원 이상
    - 전면책임감리 : 100억원 이상
  - 개정
    - 전면책임감리 : 50억원이상
    - 부분책임감리 : 교량, 터널등 주요 구조물 포함공사

<개정이유>

- 감리대상기관 및 감리대상공사의 범위 확대, 감리원의 확보, 외국감리기술의 활용등으로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

## IV. 감리원의 자격 완화

(안 제51조의2 내지 제52조의2)

### ○ 감리원의 자격

- 현행 : 기술사, 건축사등 자격증 소지자
- 개정 :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이외에 일정학력이상 경력자 추가
- 개정이유 : 자격증은 없으나 감리능력을 갖춘 자를 감리원으로 함으로써 부족한 감리 인력의 확보

### ○ 감리원의 자격을 등급화(신설)

구분 \ 기준	기 술 자 격 자	학 력 경 력 자
특 급 감 리 원	기술사, 건축사, 기사1급 10년이상	박사3년 이상, 석사9년 이상, 학사 12년 이상
고 급 감 리 원	기사1급 7년이상, 기사2급 10년이상	박사, 석사6년이상 학사 9년 이상, 전문대졸 12년 이상
중 급 감 리 원	기사1급 4년 이상, 기사2급 7년 이상	석사3년 이상, 학사 6년 이상 전문 대졸 9년이상, 고졸 12년 이상
초 급 감 리 원	기사1급 이상, 기사2급 2년 이상	학사, 전문대졸 3년 이상 고졸 6년 이상

○ 기타 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배치기준등을 정함.

## V.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 완화

(안 제51조의2 내지 제52조의2)

### ○ 감리전문회사의 구분

- 현행 : 토목감리전문회사, 건축감리전문회사
- 개정 : 종합감리전문회사, 토목감리전문회사, 건축감리전문회사

○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

<현행 및 개정>

구 분	현 행		개 정		
	토 목	건 축	토 목	건 축	종 합
자 본	10억이상	5억이상	3억이상	3억이상	10억이상
기 술 자	고급기술자 30인	고급기술자 13인	특급감리원 5인	특급감리원 5인	특급감리원 10인
	기타기술자 90인	기타기술자 30인	초급감리원 이상 25인	초급감리원 이상 25인	초급감리원 이상 40인
시 설	400m <sup>2</sup> 이상	200m <sup>2</sup> 이상	200m <sup>2</sup> 이상	200m <sup>2</sup> 이상	300m <sup>2</sup> 이상

<개정이유>

- 책임감리전문회사의 설립 및 기준 완화